

2026년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183호) 제49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Ⅰ 공고 개요

- 사업명: 2026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 공고기간: 2026. 4. 30.(목) ~ 5. 14.(목)
- 신청기간: 2026. 4. 30.(목) 14시 ~ 5. 14.(목) 16시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공고대상: 1개 세부사업, 1개 과제제안요구서(RFP)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명	RFP 번호	공고단위(RFP명)	지원기간	지원규모	선정예정 과제수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1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대학 운영 (자율_지역자율(식품))	5년 이내 (2+3)	7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25백만원)	1

※ 예산상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예정 과제 수, 과제별 예산 및 연구기간(단계구분)이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RFP 내 특이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RFP 내 선정평가 배점표 기준을 적용하므로 신청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함

II 신청 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또는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해당 사업의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 필수
-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연구책임자의 자격

- 해당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의 직인이 날인된 '고용유지 협약서(퇴직 이후 기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 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 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전 연구자의 참여제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를 점검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함(단,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에 따른 과제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 제외 과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호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통한 '26년도 적용제외 과제(안)
- ①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② 하나의 사업에 대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③ 신규과제 중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기타 관련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에 따름

- 최종 과제제안요구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제한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제4조제4항 관련)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 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 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기 내용은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에서 정한 ❶**범부처 국가 R&D 참여제한 예외기준(안)**에 해당되고, ❷**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제한 예외를 인정함**

< 범부처 공통 예외기준(안) >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1. 세금체납/채무 불이행

-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2. 회생·파산

- ① 법원의 인가를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3. 부채비율/자본잠식

- ①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투자자의 범위,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차입금의 연수(예: 2년, 5년)는 부처, 사업별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2023.6.20. 개정)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2023.6.20. 개정)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③ 선정평가 전(3 영업일 전)까지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호전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기관 자체 가결산은 불가)

※ '선정평가 전 3 영업일 전' 등 기한은 부처, 사업별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III 신청 방법

□ 공고 및 신청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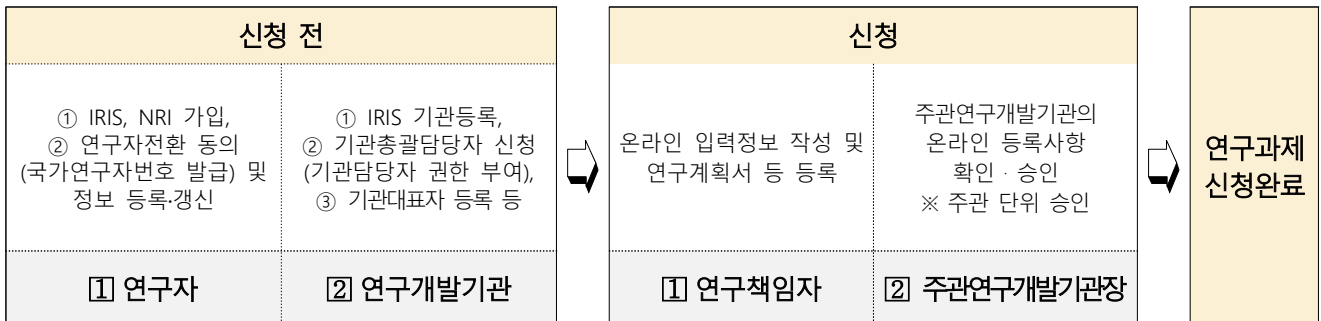
○ (공고) 해당 공고문이 게재된 온라인 홈페이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공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 공지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공지사항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 (신청)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 주관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세부내용은 [첨부1] '공고 안내서' 및 [첨부5] 중 'IRIS 관련 매뉴얼' 참고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명	공고기간	연구책임자 과제신청기간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년도 제2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6. 4. 30.(목) ~ 2026. 5. 14.(목)	2026. 4. 30.(목) 14시 ~ 2026. 5. 14.(목) 16시	2026. 4. 30.(목) 14시 ~ 2026. 5. 14.(목) 16시

※ 전산입력(신청)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공고 신청마감시간(16:00) 엄수 (마감시간 이후 연장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목록	서식 및 등록방법
1	연구개발계획서	- [첨부3] '연구개발계획서' 사용 - HWP로 업로드
2	제출서류	- [첨부4] '제출서류' 사용 - HWP로 업로드

□ 신청 시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과제신청이 최종 완료된 것임**
-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전 필수 이행사항**(연구자 IRIS 가입 및 연구개발기관 등록 등)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기한 내 기관승인 미완료 등 과제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됨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 및 접수 절대 불가)
 - * 신청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구책임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추진되었거나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과제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차별성 확인 방법 : www.ntis.go.kr → R&D 과제 준비 → 차별성검토

IV 참고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적용

※ [첨부5] '참고자료' 참고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RFP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연구개발비 결정 시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을 적용함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주의사항

- 주관연구개발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과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대상임

* 위탁연구개발과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대상 제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기관 중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초기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 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frac{\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text{해당 연구개발기관}) \text{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 \times 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하며, 심의 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개최 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연구시설장비관리활용계획’ 제출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 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은 등록·기탁하여야 함
- * 자세한 내용은 [첨부1] ‘공고 안내서 중 (붙임3)’ 참고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1] '공고 안내서 중 (붙임2)' 참고

□ 기술료 제도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 실시계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소유기관으로부터 성과가 발생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련 보고서(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요청할 예정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출연금의 10%

V 문의처

○ 시스템 입력 및 오류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 IRIS콜센터 운영시간 : 09:00 ~ 18:00

○ 공고, 평가 및 사업내용 관련 :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043-713-****)	이메일 (@khidi.or.kr)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염다혜	8667	yeom920

* 문의사항은 담당자별 이메일 및 IRIS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선정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RFP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지표
추진 주체의 역량 (40)	목표 명확성/타당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 및 비전 • 사업목표에 타당한 연차별 세부운영계획 • 규제과학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추진 주체의 사업의지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책임자 등 추진 주체의 사업 수행역량 및 참여도 • 참여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과학 인재양성 인프라(학과, 전공, 학부과목 개설, 전담교원 확보, 연구시설 등) • 참여교원, 전담교원의 역량 및 전문강사진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교원·강사의 전문성,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 활용 역량
	재정투자 계획의 적절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출연금, 연구수당 등 학생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 포함
사업 계획의 우수성 (60)	교육계획의 우수성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과학 인재양성에 특화된 교육과정 구성 • 규제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등 단계별 전략을 포함한 교육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및 심화 과목 구성의 우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과학 인재양성을 위한 주제, 목표 등 구체적인 연구추진계획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성과 창출·활용 계획의 적절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유치·배출·취업지원의 구체적 계획 및 현실성 • 개발된 평가기술 등 성과의 활용·확산계획 • 성과의 산업·경제 파급효과 및 인재양성 기대효과

붙임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항목	적용대상	점수
<가점 항목>1)		
연구결과 우수	최근 2년 이내 최종평가에서 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1
포상	최근 3년 이내 훈령 제81조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2
외부제안자	수행자 선정평가 시 본인이 제안한 과제(수정·보완하여 공고된 과제 포함)에 응모하는 경우	1
기술이전 실적 우수자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	1
보안과제 수행	최근 3년 이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	최근 3년 이내(신청 마감일 기준)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감점 항목>2)

제제 대상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5
수행 포기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제제부가금 및 환수금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제부가금 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 가·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 이를 합산하되, 합산 후 가점의 상한은 최대 3점 이내로 하며 감점의 상한은 없음

※ 가·감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의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가·감점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청 시 제출한 가·감점 반영

1) 근거 :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2)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